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6. . . (제 회)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6.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공무원이 책임 있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행정 보호지원단의 구성·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적극행정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소송 등에 대한 비용 요건 및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보호·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다기관 소관 사안에 대한 적극행정위원회 합동회의의 협의·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결 사항 공개 및 적극행정 책임관의 직권 의견제시 요청 등 적극행정위원회의 운영체계를 개선하여 접근성과 활용성을 높이고,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기관 차원의 적극행정 보호·지원 강화

(안 제4조, 제10조, 제17조, 제17조의2)

- 적극행정 보호관, 전담 직원, 내·외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적극행정 보호지원단’을 신설하여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법률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 부작위·소극행정 등 비위행위가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극행정 위원회 의결 없이 공무원 신청만으로도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지원하여 비용 부담을 완화하되, 고의·중과실이나 형사상 유죄 판결 등 환수 조치토록 함.
- 기소 후 형사소송 시에 무죄 확정 판결 전이라도 선제적으로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지원하여 방어권을 보장하고자 함.

나. 적극행정위원회의 운영체계 개선(안 제11조의4, 제11조의5 및 제17조의4)

- 다기관 연계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행정위원회 합동회의를 개최토록 하되 교육부·행정안전부에서 협의·조정이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제11조의4)
- 적극행정위원회 회의 참여자의 비밀누설 금지 규정 신설(제11조의5)
- 소극행정 신고를 처리하는 경우 의견 제시 요청 제도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도록 절차 개선(제17조의4)

다. 적극행정위원회의 신청 절차 확대 및 의결 공개(제12조 및 제12조의 2)

- 담당 공무원의 신청 외에도 적극행정 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하여 직권으로 적극행정 위원회에 의견제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절차 개선(제12조)
-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결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 등을 제외하고 공개토록 함.(제12조의2)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8. 19. ~ 9. 28.) 예정,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해 민사소송이나 형사 고소·고발 등을 당한 경우 적극행정 보호지원단을 통하여 이에 대한 상담 및 변호사 선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그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제12조제2항”을 “제12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지원에 관한”을 “지원의 대상 또는 범위에 관하여 판단이 어렵거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제17조제4항”을 “제17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2호”를 “제1항제1호”로 한다.

제11조제6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중전의 제9항) 중 “제8항”을 “제7항”으로 한다.

제11조의4 및 제11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4(합동회의) ① 위원회는 다른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현안을 심의하는 등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위원회(중앙행정기관의 경우에는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1조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를 말한다)와 합동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소관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합동회의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 의견 제시 및 회의 참석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을 간사로 지정할 수 있다.

제11조의5(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사항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적극행정 책임관은 적극행정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하여 직권으로 위원회에 의견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의결사항의 공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2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인 경우이거나 공개될 경우 관련자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위원회가 비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 노력도를 점수화하여 마일리지를 부여할 수 있으며, 적립된 마일리지에 따라 포상 등 필요한 보상을 할 수 있다.

제15조제5항 후단 중 “제12조제1항”을 “제12조제1항 및 제2항”으로, “제11조제7항”을 “제11조제6항”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본문 중 “제12조제1항”을 “제12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제12조제2항”을 “제12조제3항”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경우(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로 한정한다)”를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변호사 선임 등 소송수행 비용을 지원받은 자가 그 지원의 대상이 된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

를 환수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
2. 정직 이상의 중징계 처분이 최종 확정된 경우
3. 민사소송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어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4. 형사소송에서 유죄 판결(선고유예 및 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이 확정된 경우
5. 그 밖에 위원회에서 지원을 취소함이 적절하다고 심의·의결한 경우

제17조의2를 제17조의3으로 하고,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적극행정 보호지원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적극행정 공무원의 적극행정과 관련한 법률 상담, 변호사 선임 지원 및 소송 수행 지원 등을 위하여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가 포함된 적극행정 보호지원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 보호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제17조의3을 제17조의4로 하고, 제17조의4(종전의 제17조의3)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함에 있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5조 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의견 제시 요청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형사소송 시 소송 비용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17조제2항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 ① · ② (생략)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하여 소속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신 설>	제4조(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해 민사소송이나 형사 고소·고발 등을 당한 경우 적극행정 보호지원단을 통하여 이에 대한 상담 및 변호사 선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그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적극행정위원회의 기능 등) ①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 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생략) 2. 제12조제2항에 따른 사후추인에 관한 사항	제10조(적극행정위원회의 기능 등) ① ----- ----- ----- -----. 1. (현행과 같음) 2. 제12조제3항에 따른 사후추인에 관한 사항

3.4. (생략)

5.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6. 제17조제4항에 따른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7. (생략)

②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 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인사위원회가 같은 항 제2호 또는 이 영 제1항제2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 ⑤ (생략)

⑥ 위원회는 다른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현안을 심의하는 등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위원회(중앙행정기관의 경우에는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1조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를 말한다)와 합동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3.4. (현행과 같음)

5. -----
-- 지원의 대상 또는 범위에 관하여 판단이 어렵거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
--

6. 제17조제5항에 따른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7. (현행과 같음)

② -----

----- 제1항제1호 -----

--.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 ⑤ (현행과 같음)

<삭제>

⑦ ~ ⑧ (생략)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신설>

⑥ ~ ⑦ (현행 제7항부터 제8항까지와 같음)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1조의4(합동회의) ① 위원회는 다른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현안을 심의하는 등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위원회(중앙행정기관의 경우에는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1조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를 말한다)와 합동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소관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합동회의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 의견 제시 및 회의 참석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을 간사로 지정할 수 있다.

<신 설>

제12조(위원회에 대한 의견 제시
요청 등) ① (생 략)

<신 설>

② (생 략)

<신 설>

제11조의5(비밀누설 금지) 위원회
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
상 알게 된 사항 중 「공공기관
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
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
보에 해당하는 비밀을 누설해서
는 아니 된다.

제12조(위원회에 대한 의견 제시
요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적극행
정 책임관은 적극행정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 담당 공무원의 의견을 청취
하여 직권으로 위원회에 의견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12조의2(의결사항의 공개) 지방
자치단체의 장은 제12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해
서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
해 공개해야 한다. 다만, 「공공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인 경우이거나 공개될 경우
관련자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공
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

제13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 ① ~ ③ (생략)
<신설>

④ (생략)

제15조(징계 요구 등 면책) ① ~ ④ (생략)

⑤ 공무원이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른 면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제시한 의견에 제11조제7항에 따라 감사기구의 장이 제출한 의견이 반영된 경우에는 「감사원법」 제34조의3 및 이 조 제2항에 따른 면책 요건도 충

할 우려가 있어 위원회가 비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 노력도를 점수화하여 마일리지를 부여할 수 있으며, 적립된 마일리지에 따라 포상 등 필요한 보상을 할 수 있다.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제15조(징계 요구 등 면책)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제12조제1항 및 제2항-----
 ----- 제11조제6항에

족한 것으로 추정한다.

⑥·⑦ (생략)

제16조(징계등 면제) ①·② (생략)

③ 공무원이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징계의결등을 하지 않는다. 다만, 해당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위원회가 심의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공무원이 제12조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위원회의 사후 추인을 받은 경우에는 징계의결등을 하지 않는다. 다만,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위원회가 심의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생략)

제17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① (생략)

-----.

⑥·⑦ (현행과 같음)

제16조(징계등 면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제12조제1항 및 제2항-----

-----.

④ ----- 제12조제3항-----

-----.

⑤ (현행과 같음)

제17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소송대리인 선임 등 소송수행 비용을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이후 지원해야 한다.

1. · 2. (생략)

3.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해 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한 경우(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로 한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같다)이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하여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에는 소송대리인 선임 등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신설>

② -----

-----.

<단서 삭제>

1. · 2. (현행과 같음)

3. -----

----- 경우

③ -----

----- 제6항-----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변호사 선임
등 소송 수행 비용을 지원받은
자가 그 지원의 대상이 된 사건
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
2. 정직 이상의 중징계 처분이
최종 확정된 경우
3. 민사소송에서 고의 또는 중
대한 과실이 인정되어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4. 형사소송에서 유죄 판결(선
고유예 및 집행유예를 포함
한다)이 확정된 경우
5. 그 밖에 위원회에서 지원을
취소함이 적절하다고 심의·
의결한 경우

④ (생 략)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
정한 사항 외에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및 의견 제
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⑥ ----- 제5항-----

다.

⑥ (생략)

<신설>

제17조의2 (생략)

제17조의3(소극행정 신고) ① ~

④ (생략)

<신설>

ㄱ.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제17조의2(적극행정 보호지원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적극행정 공무원의 적극행정과 관련한 법률 상담, 변호사 선임 지원 및 소송 수행 지원 등을 위하여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가 포함된 적극행정 보호지원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 보호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제17조의3 (현행 제17조의2와 같음)

제17조의4(소극행정 신고)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함에 있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5조 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의견 제시 요청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공무원단체과	
연 락 처	(044) 205 - 3293